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
------------	----

발의년월일 1996년 1월
발 의 자 김충웅의원외 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제14877호, 1995. 12. 30)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제3조1항)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제2항의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의수당지급) ① 의원이 회기중 의회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신 설〉</p> <p>②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제3조(회의수당지급) ① -----</p> <p>-----</p> <p>-----</p> <p>-----</p> <p>-----</p> <p>다만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제2항의 출석일수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② -----</p> <p>-----</p> <p>-----</p> <p>-----</p> <p>-----</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2. 3.

운영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0일 김충웅 의원의 6인 발의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1996년 2월 3일 제40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김충웅 위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7호, 1995. 12. 30)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회의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회의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7호, 1995. 12. 30)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제까지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구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을 출석일수에 포함시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관계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도 첫번 임시회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이 1995. 12. 30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原案可決